|  |  |  |
| --- | --- | --- |
| **원료로 사용 가능한 수입 고체폐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94호  <원료로 사용 가능한 수입 고체폐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이 2017년 7월 18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7년 12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 원료로 사용 가능한 수입 고체폐기물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원료로 사용 가능한 수입 고체폐기물(이하 '폐기물원료'로 약칭)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수입 폐기물원료는 원료로 사용 가능한 재생자원에 속해야 하며 이용 가치가 있어야 한다.  수입 폐기물원료는 중국의 법률•법규, 국가환경보호통제표준 및 국가기술규범의 기타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으로 약칭)이 전국의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질검총국이 각 지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부서(이하 '검사검역부서'로 약칭)는 해당 관할구역의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국가는 수입 폐기물원료의 해외 공급자(이하 '공급자'로 약칭) 및 국내 수화인(이하 '수화인'으로 약칭)에 대하여 등록등기제도를 시행한다. 공급자와 수화인은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등록등기를 취득하여야 한다.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5조 국가는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선적전검사제도를 시행한다. 수입 폐기물원료를 선적하기 전에 검사검역부서 또는 선적전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기구(이하 '선적전검사기구'로 약칭)가 선적전검사를 실시하고 선적전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질검총국은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선적전검사에 종사하는 검사기구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질검총국은 법에 의거하여 선적전검사 및 선적전검사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수입 폐기물원료가 국내에 도착 후 검사검역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수화인은 수입 폐기물원료 입국항의 검사검역부서에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검역신고 시 이 방법 제5조에 규정한 선적전검사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질검총국은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검사검역 리스크 조기경보 및 신속대응 관리를 시행한다.  제8조 질검총국은 공급자•수화인•선적전검사기구에 대하여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수입 폐기물원료의 공급자•수화인•선적전검사기구는 수입 폐기물원료 생산•경영 및 선적전검사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라야 하며 수입 폐기물원료가 중국의 법률•법규와 관련 기술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공급자 등록등기  제9조 질검총국이 수입 폐기물원료 공급자 등록등기의 신청접수•심사•비준 및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공급자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소재국(지역)에서 합법적인 경영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소재국(지역)에서 고정 사무실과 필요한 기초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출입국 검사검역, 환경보호, 고체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국의 법률•법규와 관련 표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4)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RIOS 시스템 등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5) 그가 공급하는 폐기물원료에 대한 환경보호•품질통제 조치와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그가 공급하는 폐기물원료가 중국의 출입국 검사검역, 환경보호, 고체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6) 방사성 물질 검측에 필요한 설비•시설과 검측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7) 지난 3년간 중대한 안전•위생•환경보호•사기 등 문제가 발생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11조 신청인은 국내반입화물 검사검역 감독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등기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등록등기 신청을 성공적으로 제출한 후 30일(天)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질검총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등기 신청서;  (2) 공증을 거친 세무등기문건, 상업등기문건이 있을 경우 공증을 거친 상업등기문건도 제출하여야 함;  (3) 조직기구, 부서 및 직무•직책에 대한 설명;  (4) 폭•길이가 표시된 고정 사무실 평면도, 가공장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공장소 평면도도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가공장소의 실경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3매 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5)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RIOS 시스템 인증증서의 칼라사본;  (6) 등록등기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과 위임자•피위임자의 신분증명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중문본 또는 중영문 대조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12조 질검총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등기 신청에 대하여 상황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 즉석에서 또는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후 5일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날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는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거나 신청인이 질검총국의 요구에 따라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는 보정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3) 규정된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등기 절차를 종료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요구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신청서류를 모두 보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정한 서류가 여전히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를 거절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질검총국은 등록등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전문가평가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가평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결정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단,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평가심사팀은 평가심사 업무가 끝난 후 평가심사 결론을 내리고 질검총국에 평가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질검총국은 평가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등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질검총국은 등록등기 신청이 심사를 통과한 경우 등록등기를 허가하고 등록등기증서를 발급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등록등기를 불허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며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급자 등록등기 내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 발생일로부터 30일(天) 내에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질검충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등기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공급자는 변경 신청 시 기존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질검총국은 그가 비준한 변경사항이 기존 등록등기증서에 기재된 사항인 경우 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명칭, 상업등기주소, 법정대표인 3개 사항 중 누계하여 2개 사항 이상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질검총국에 등록등기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공급자는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天) 전에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질검총국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규정된 기한이 경과된 후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질검총국은 해당 공급자가 법에 정해진 등록등기 갱신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등기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제17조 질검총국은 공급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등기 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갱신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질검총국이 등록등기 접수 거절, 등록등기 절차 종료, 등록등기 불허 결정을 내린 후 신청인은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질검총국에 등록등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수화인 등록등기  제19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해당 관할구역 내 수화인 등록등기의 신청접수•심사•비준 및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수화인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합법적인 수입경영자격을 보유한 가공이용기업이어야 한다.  (2) 고정 사무실과 필요한 기초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 물질 검측 설비와 검측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출입국 검사검역, 환경보호, 고체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국의 법률•법규와 관련 표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4) 그가 공급하는 폐기물원료에 대한 환경보호•품질통제 조치와 능력을 구비하고 필요한 관리제도를 갖춤으로써 그가 공급하는 폐기물원료가 중국의 출입국 검사검역, 환경보호, 고체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 신청인은 국내반입화물 검사검역 감독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등기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등록득기 신청을 성공적으로 제출한 후 30일(天)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속 검사검역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등기 신청서;  (2) 영업집조 원본과 사본;  (3) 수입경영자격 증명문서 원본과 사본;  (4) 관리제도 문서;  (5) 환경보호부서로부터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업 비준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제22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수화인 등록등기 신청에 대하여 상황별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 즉석에서 또는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후 5일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날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는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거나 신청인이 직속 검사검역국의 요구에 따라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는 보정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3) 규정된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등기 절차를 종료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요구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신청서류를 모두 보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정한 서류가 여전히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신청의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제23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전문가평가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가평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결정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단,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평가심사팀은 평가심사 업무가 끝난 후 평가심사 결론을 내리고 직속 검사검역국에 평가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평가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등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은 등록등기 신청이 심사를 통과한 경우 등록등기를 허가하고 등록등기증서를 발급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등록등기를 불허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며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수화인 등록등기 내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 발생일로부터 30일(天) 내에 이 방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직속 검사검역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등기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수화인은 변경 신청 시 기존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은 그가 비준한 변경항이 기존 등록등기증서에 기재된 사항인 경우 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수화인의 명칭, 상업등기주소, 법정대표인 3개 사항 중 누계하여 2개 사항 이상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에 등록등기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수화인은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天) 전에 이 방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직속 검사검역국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등기 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화인이 규정된 기한이 경과된 후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해당 수화인이 법에 정해진 등록등기 갱신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등기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제28조 직속 검사검역국이 등록등기 신청 접수 거절, 등록등기 절차 종료, 등록등기 불허 결정을 내린 후 신청인은 이 방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등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선적전검사  제29조 질검총국은 수입 폐기물원료 선적전검사 전자관리 시스템(이하 '선적전검사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약칭)의 개발,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선적전검사 업무에 대한 정보화 관리를 실현한다.  제30조 공급자는 폐기물원료를 선적하기 전에 선적전검사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검사검역부서에 선적전검사를 신청하거나 선적전검사기구에 의뢰하여 선적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검역부서•선적전검사기구는 수입 폐기물원료 선적전검사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급자의 선적전검사 신청을 접수하고 선적전검사 결과를 입력하며 선적전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선적전검사기구는 소재국(지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이 이뤄진 검사기구이어야 한다.  선적전검사기구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질검총국에 제출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재국(지역)에서 합법적인 등록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제3자 검사검역기구 자격증명의 공증본;  (2) 소재국(지역) 내 고정 사무실 및 경영장소에 관한 정보;  (3) ISO/IEC17020 인증 획득 증명서류;  (4) 선적전검사에 종사하는 폐기물원료의 종류;  (5) 선적전검사증서 서명권자의 정보와 인감 양식;  (6) 회사 정관.  제출한 정보는 중문본 또는 중영문 대조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의 제출서류가 완비된 경우 질검총국이 대외 공포한다.  제32조 검사검역부서•선적전검사기구는 해외 선적지 또는 화물발송지에서 중국의 국가환경보호통제표준, 관련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와 선적전검사규칙에 따라 선적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검사검역부서•선적전검사기구는 그가 실시한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 형태의 선전적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선적전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검사근거가 정확하고 검사과정이 명백하며 검사결과가 진실적이어야 한다.  (2) 통일적이고 추적가능한 고유번호가 있어야 한다.  (3) 검사증서는 중문 또는 중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문을 기준으로 한다.  (4)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90일(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검사검역부서가 개항장 도착화물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화물과 서류 불일치, 불합격 환경보호 항목이 발견된 경우 선적전검사를 실시한 검사검역부서 또는 선적전검사기구는 질검총국에 선적전검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 과정 등 상황을 기록한 영상자료와 서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선적전검사기구와 그 관련기구는 공급자 등록등기를 신청하거나 공급자 등록등기를 대리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원료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선적전검사기구의 비안(備案) 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 발생일로부터 30일(天) 내에 이 방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질검총국에 변경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질검총국은 비안(備案)이 이뤄진 선적전검사기구에 대하여 분류화 관리를 실시하며 비안(備案)이 이뤄진 선적전검사기구는 신용관리 원칙에 따라 A형, B형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적전검사기구는 자주적 원칙에 따라 A형 선적전검사기구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감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선적전검사 업무에 어울리는 검사인력 및 검측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중국의 환경보호, 고체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와 수입 폐기물원료 선적전검사에 관한 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전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기업신용 관리를 중요시하며 승낙을 엄격히 이행하고 건전한 품질경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서비스 품질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본 조 전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선적전검사기구는 B형 선적전검사기구로 분류한다.  제5장 도착화물 검사검역  제38조 폐기물원료가 개항장에 도착한 후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입국항 검사검역부서에 검역신고를 하여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검역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 등록등기증서 (사본);  (2) 수화인 등록등기증서 (사본);  (3) 선적전검사증서;  (4) 수입제한형 폐기물원료의 경우 수입허가증명을 제출해야 함;  (5) 계약서,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운송장 등 필요한 서류.  제39조 검사검역부서는 검사검역에 관한 법률•법규와 규칙, 국가환경보호통제표준 또는 국가기술규범의 기타 강제성 요구에 따라 입국항에서 폐기물원료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오염 정도에 근거하여 소독•훈증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역처리 없이 통과시켜서는 아니된다.  질검총국은 법에 의거하여 기타 검사검역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 B형 선적전검사기구가 선적전검사를 실시한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검사검역부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검사검역부서가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장소는 수입 폐기물원료 검사검역 장소 건설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2조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질검총국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시험을 통과한 자이어야 한다.  제43조 검사검역부서는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검사검역 과정에서 국가환경보호통제표준, 국가기술규범의 기타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통관증명을 발행하고 세관 통과를 허가하여야 한다. 수입 폐기물원료가 국가환경보호통제표준, 국가기술규범의 기타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반송처리통보서를 발행하고 서면으로 세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수입 폐기물원료에서 동식물 전염병이 발견된 경우 효과적인 검역 무해화 처리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처리조치가 없을 경우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소각처리하고 검역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44조 공급자와 수화인은 등록등기한 업무 범위에 따라 폐기물원료 공급•수입 등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수화인이 수입하는 폐기물원료는 자체 가공•이용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기타 업체•조직 또는 개인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급자, 수화인 및 그 관련기구는 폐기물원료 선적전검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질검총국•검사검역부서는 직책에 따라 공급자•수화인•선적전검사기구에 대하여 현장검사, 검증, 화물 환경보호•품질 상황 추적 등 방식으로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 선적전검사기구는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제3자의 신분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선적전검사 업무를 전개하고 그가 발행하는 선적전검사증서의 진실성•정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47조 질검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서가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적전검사기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 질검총국은 경고통보 발표와 더불어 일정 기간 동안 그가 발행한 선적전검사증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선적전검사기구가 발행한 선적전검사증서가 이 방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2) 선적전검사기구에게 이 방법 제35조, 제46조, 제59조에 규정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제48조 공급자•수화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질검총국•직속 검사검역국이 직권에 따라 그의 등록등기를 취소한다.  (1) 등록등기한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주소인 경우;  (2) 공급자의 상업등기문건 또는 세무등기문건이 뮤효한 경우;  (3) 수화인의 영업집조가 무효한 경우;  (4) 법정대표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관련 상황을 은폐하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등기를 취득한 경우;  (6) 사기•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등기를 취득한 경우.  제49조 질검총국•검사검역부서는 공급자•수화인 및 선적전검사기구에 대하여 A형, B형, C형 세가지 유형의 리스크 조기경보 및 신속대응 관리를 실시한다.  제50조 특정 국가(지역)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유형의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검사검역부서는 리스크 조기경보 유형에 따라 검사 강화, 전수검사 또는 검역신고 불접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절 공급자에 대한 감독관리  제51조 공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질검총국은 A형 리스크 조기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검사검역부서는 해당 공급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원료의 검역신고 신청을 1년 동안 접수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원료에 심각한 전염병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2) 폐기물원료의 서류와 화물이 불일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조사 결과 공급자의 책임으로 판명된 경우;  (3) B형 조기경보 기간에 다시 불합격 환경보호 항목 또는 중대 전염병이 검출된 경우.  제52조 공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질검총국은 B형 리스크 조기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검사검역부서는 해당 공급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최소한 180일(天), 100회의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1) 1년 내에 화물과 서류 불일치 또는 불합격 환경보호 항목 검출이 3회 및 그 이상 발생한 경우;  (2) 비교적 큰 전염병 리스크로 인해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3) 공급자 등록등기 내용에 변화가 발생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질검총국에 변경 수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등기가 취소된 후 다시 등록등기를 획득한 경우;  (5) 이 방법 제51조에 따른 A형 리스크 조기경보 조치가 해제됨으로써 수입검역신고 신청 접수가 다시 회복된 경우;  (6) 현장검사에서 품질경영체계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53조 공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질검총국이 C형 리스크 조기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검사검역부서는 해당 공급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사를 실시한다.  (1) 폐기물원료가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2) 리스크 관리통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4조 공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질검총국이 그의 등록등기를 취소한다.  (1) 그가 수출한 폐기물원료에서 심각한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사유가 검출된 경우;  (2) 그가 수출한 폐기물원료에 대한 반송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화인의 반송처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가 수출한 폐기물원료에 대한 반송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검사검역부서가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증명을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의 원인으로 인해 폐기물원료가 수출국으로 송출되지 못한 경우.  (4) 이미 반송된 불합격 폐기물원료를 다시 중국 대륙지역으로 운송한 경우;  (5) 등록등기증서 또는 등록등기번호를 기타 기업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6) 조작된 입국허가증명문서를 포함하여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7) 폐기물원료를 수출함에 있어 위조•조작 등 사기 행위를 행한 경우;  (8) 검사검역기구의 감독관리를 거부하고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9) 이 방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업무 범위를 벗어나 화물을 공급한 경우;  (10) 공급자 또는 그 관련기구가 이 방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을 어기고 선적전검사에 종사한 경우;  (11) 이 방법 제10조에 규정한 조건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2절 수화인에 대한 감독관리  제55조 수화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질검총국은 A형 리스크 조기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검사검역부서는 그가 수입하는 폐기물원료의 검역신고 신청을 1년 동안 접수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원료의 서류와 화물이 불일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조사 결과 수화인의 책임으로 판명된 경우;  (2) B형 조기경보 기간에 불합격 환경보호 항목 또는 중대 전염병이 다시 검출되었고 조사 결과 수화인의 책임으로 판명된 경우.  제56조 수화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질검총국은 B형 리스크 조기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검사검역부서는 해당 수화인이 검역신고하는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최소한 180일(天), 100회의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1) 폐기물원료의 서류와 화물 불일치, 불성실 신고가 발생하였고 조사 결과 수화인의 책임으로 판명된 경우;  (2) 수화인 등록등기 내용에 변화가 발생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직속 검사검역국에 변경 수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1년 내에 서류와 화물 불일치 또는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이 누계하여 3회 및 그 이상 발생하였고 조사 결과 수화인의 책임으로 판명된 경우;  (4) 등록등기가 취소된 후 다시 등록등기를 획득한 경우;  (5) 이 방법 제55조에 따른 A형 리스크 조기경보 조치가 해제됨으로써 수입 검역신고 신청 접수가 다시 회복된 경우;  (6) 현장검사에서 품질경영체계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57조 수화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질검총국은 C형 리스크 조기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검사검역부서는 해당 수화인이 검역신고하는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사를 실시한다.  (1) 폐기물원료가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2) 리스크 통제관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8조 수화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이 그의 등록등기를 취소한다.  (1) 관련 증서를 위조•변조•매매하거나 위조•변조된 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2) 조작된 입국허가증명문서를 포함하여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 등록등기증서 또는 등록등기번호를 기타 기업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4) 폐기물원료를 수입함에 있어 위조•조작 등 사기 행위를 행한 경우;  (5)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 폐기물원료의 반송을 거부하는 경우;  (6)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 폐기물원료가 수화인의 원인으로 인하여 검사검역부서가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증명을 발행한 후 6개월 내에 수출국으로 송출되지 못한 경우;  (7) 검사검역기구의 감독관리를 거부하고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8) 이 방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9) 이 방법 제20조에 규정한 조건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3절 선적전검사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제59조 선적전검사기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질검총국이 A형 리스크 조기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검사검역부서는 해당 선적전검사기구가 선적전검사를 실시한 폐기물원료의 수입 검역신고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1) 그가 선적전검사를 실시한 폐기물원료가 1개월 내에 검사검역부서에 의해 불합격 환경보호 항목이 검출된 횟수가 누계하여 5회 및 그 이상에 도달하였고 불합격 환경보호 항목 검출율이 0.5% 및 그 이상에 도달한 경우;  (2) 그가 선적전검사를 실시한 폐기물원료가 1년 내에 검사검역부서에 의해 불합격 환경보호 항목이 검출된 횟수가 누계하여 3회 및 그 이상에 도달한 경우;  (3) 그가 선적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선적전검사증서를 발급한 경우;  (4) B형 조기경보 기간에 그가 선적전검사를 실시한 폐기물원료가 검사검역부서에 의해 불합격 환경보호 항목이 다시 검출된 경우.  (5) 감독관리를 거부하고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제60조 선적전검사기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질검총국은 B형 리스크 조기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검사검역부서는 해당 선적전검사기구가 선적전검사를 실시한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최소한 180일(天), 1,000회 이상의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1) 그가 선적전검사를 실시한 폐기물원료가 1개월 내에 검사검역부서에 의해 불합격 환경보호 항목이 검출된 횟수가 누계하여 3회 및 그 이상에 도달하였고 불합격 환경보호 항목 검출율이 0.5% 이상에 도달한 경우;  (2) 그가 선적전검사를 실시한 폐기물원료가 검사검역부서에 의해 심각한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사유가 검출된 경우;  (3) 그가 선적전검사를 실시한 폐기물원료가 검사검역부서에 의해 불합격 환경보호 항목이 검출되었고 선적전검사기구가 규정에 따라 질검총국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선적전검사를 실시하고 선적전검사증서를 발행함에 있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일상 감독관리 과정에서 품질경영체계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6) 이 방법 제59조에 따른 A형 리스크 조기경보가 해제됨으로써 수입 검역신고 신청 접수가 다시 회복된 경우.  제61조 선적전검사기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질검총국은 C형 리스크 조기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검사검역부서는 그가 선적전검사를 실시한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사를 실시한다.  (1) 선적전검사기구의 비안(備案) 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후 규정에 따라 변경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그가 선적전검사를 실시한 폐기물원료가 검사검역부서에 의해 불합격 환경보호 항목이 검출되었으나 이 방법 제59조, 제60조에 규정한 조기경보 조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리스크 관리통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7장 법률책임  제62조 공급자•수화인이 관련 상황을 은폐하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접수 또는 등록등기를 거절당하는 경우 질검총국 또는 직속 검사검역국이 경고를 주며 해당 공급자•수화인은 1년 동안 등록등기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63조 공급자•수화인이 사기•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등기를 취득한 후 등록등기를 취소당한 경우 3년 동안 등록등기를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수입 폐기물원료의 공급자•수화인이 등록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선적전검사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송을 명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65조 수입 폐기물원료의 수화인이 검사검역부서로부터 관련 서류를 취득함에 있어 수입 폐기물원료의 진실된 상황을 불성실하게 제공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수입 폐기물원료 화물가액의 5%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66조 수화인이 이 방법 44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업무 범위를 벗어나 수입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시정을 명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67조 수입 폐기물원료 검사검역 업무 담당인력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칙  제68조 해외에서 보세구•수출가공구•자유무역구 등 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원료에 대한 관리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69조 증여, 수출 후 반송, 샘플 제공 등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이 허용된 폐기물원료에 속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장소 내 업체의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폐품•불량품•자투리와 피해화물이 폐기물원료에 해당되어 국내로 반입이 필요한 경우 수입검사를 면제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통관증명서를 발급한다.  제70조 수입 폐선박의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검사검역을 실시하며 공급자 등록등기증서와 선적전검사증서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71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의 선박•항공기 및 기자재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원료의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검사검역을 실시하며 공급자 등록등기증서, 수화인 등록등기증서, 선적전검사증서 및 수입허가증명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72조 이 방법에서 '일(日)'이라 함은 근무일을 지칭하며 법정공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방법에서 '일(天)'이라 함은 달력일을 지칭하며 법정공휴일이 포함된다.  제73조 중국 홍콩•마카오 및 타이완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폐기물원료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74조 수입 폐기물원료의 공급자•수화인이 질겁총국 또는 검사검역부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중문본을 기준으로 한다.  제75조 검사검역부서는 업무 수요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을 초빙하여 현장검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제76조 공급자•수화인 등록등기와 선적전검사기구 관리에 관한 실시세칙은 질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77조 이 방법은 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78조 이 방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原) 국가검사검역국이 1999년 11월 22일 발표한 <수입 폐기물원료 선적전검사기구 인가 관리방법(시범시행)>( 원(原) 국가검사검역국령 제2호)과 국가질검총국이 2009년 8월 21일 발표한 <원료로 사용 가능한 수입 고체폐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국가질검총국령 제119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  | **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检验检疫**  **监督管理办法**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94号  《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已经2017年7月18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8年2月1日起施行。  局 长  2017年12月8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检验检疫监督管理，保护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及其实施细则、《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等有关法律法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以下简称废物原料）的检验检疫和监督管理。  进口废物原料应当属于可用作原料的再生资源，具有可利用价值。  进口废物原料应当符合中国法律法规、国家环境保护控制标准和国家技术规范的其他强制性要求。  第三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质检总局）主管全国进口废物原料的检验检疫和监督管理工作。  质检总局设在各地的出入境检验检疫部门（以下简称检验检疫部门）负责所辖区域进口废物原料的检验检疫和监督管理。  第四条 国家对进口废物原料的国外供货商（以下简称供货商）、国内收货人（以下简称收货人）实行注册登记制度。供货商、收货人在签订对外贸易合同前，应当取得注册登记。  注册登记有效期为5年。  第五条 国家对进口废物原料实行装运前检验制度。进口废物原料在装运前，应当由检验检疫部门或者承担装运前检验的检验机构（以下简称装运前检验机构）实施装运前检验并出具装运前检验证书。  质检总局不予指定检验机构从事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  质检总局对装运前检验和装运前检验机构依法实施监督管理。  第六条 进口废物原料到货后，由检验检疫部门依法实施检验检疫监管。  收货人应当在进口废物原料入境口岸向检验检疫部门报检，报检时应当提供本办法第五条规定的装运前检验证书。  第七条 质检总局对进口废物原料实行检验检疫风险预警和快速反应管理。  第八条 质检总局对供货商、收货人、装运前检验机构实施诚信管理。  进口废物原料供货商、收货人、装运前检验机构应当按照中国法律法规规定从事进口废物原料生产经营及装运前检验活动，保证进口废物原料符合中国法律法规规定和相关技术要求。  第二章 供货商注册登记  第九条 质检总局负责进口废物原料供货商注册登记申请的受理、审查、批准和监督管理工作。  第十条 申请供货商注册登记应当符合下列条件：  （一）具有所在国家（地区）合法的经营资质；  （二）在其所在国家（地区）具有固定的办公场所及相应基础设施；  （三）熟悉并遵守中国出入境检验检疫、环境保护、固体废物管理的法律法规及相关标准；  （四）获得ISO9001质量管理体系或RIOS体系等认证；  （五）具有对所供废物原料进行环保质量控制的措施和能力，保证其所供废物原料符合中国出入境检验检疫、环境保护、固体废物管理的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  （六）具备放射性检测设备、设施及检测能力；  （七）近3年内未发生过重大的安全、卫生、环保、欺诈等问题。  第十一条 申请人应当通过进境货物检验检疫监管系统提交注册登记申请，并在网络提交注册登记申请成功后的30天内向质检总局提交以下书面材料：  （一）注册登记申请书；  （二）经公证的税务登记文件，有商业登记文件的还需提供经公证的商业登记文件；  （三）组织机构、部门和岗位职责的说明；  （四）标明尺寸的固定办公场所平面图，有加工场地的，还应当提供加工场地平面图，3张以上能全面展现上述场所和场地实景的照片；  （五）ISO9001质量管理体系或者RIOS体系等认证证书彩色复印件；  （六）委托代理人提出注册登记申请的，应当提交委托书原件以及委托双方身份证明复印件。  提交的文字材料，应当使用中文或者中英文对照文本。  第十二条 质检总局对申请人提出的注册登记申请，应当根据下列情况分别作出处理：  （一）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当场或者在收到申请材料后5日内一次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为受理；  （二）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或者申请人按照质检总局的要求提交全部补正申请材料且补正材料符合法定形式的，应当予以受理；  （三）未在规定期限内补正有关申请材料的，应当终止办理注册登记，并书面告知申请人；  （四）未按照要求全部补正申请材料或者补正后申请材料仍不符合法定形式的，不予受理，并书面告知申请人。  第十三条 质检总局应当自受理注册登记申请之日起10日内组成专家评审组，实施书面评审。专家评审所需时间不计算在审查与决定期限内，但应当书面告知申请人。  评审组应当在评审工作结束后作出评审结论，向质检总局提交评审报告。  第十四条 质检总局自收到评审报告之日起10日内作出是否准予注册登记的决定。  质检总局对审查合格的，准予注册登记并颁发注册登记证书；对审查不合格的，不予注册登记，并书面说明理由，告知申请人享有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第十五条 供货商注册登记内容发生变化的，应当自变化之日起30天内向质检总局提出变更申请，并按照本办法第十一条规定办理。  涉及注册登记证书内容变更的，供货商申请变更时应当交回原证书。质检总局批准的变更涉及原注册登记证书内容的，应当重新颁发证书。  供货商的名称、商业登记地址、法定代表人三项中累计两项及以上发生变化的，应当重新向质检总局申请注册登记。  第十六条 供货商需要延续注册登记有效期的，应当在注册登记有效期届满90天前向质检总局提出延续申请，并按照本办法第十一条规定办理。  供货商未按规定期限提出延续申请的，质检总局可以认定为不符合注册登记延续的法定条件，不予受理该申请。注册登记有效期届满后，注册登记自动失效。  第十七条 质检总局应当根据供货商的申请，在注册登记有效期届满前作出是否准予延续注册登记的决定；逾期未作出决定的，视为准予延续。  第十八条 质检总局作出不予受理注册登记、终止办理注册登记、不予注册登记决定的，申请人可以向质检总局重新申请注册登记，并按本办法第十一条的规定办理。  第三章 收货人注册登记  第十九条 直属检验检疫局负责所辖区域收货人注册登记申请的受理、审查、批准和监督管理工作。  第二十条 申请收货人注册登记应当符合下列条件：  （一）具有合法进口经营资质的加工利用企业；  （二）具有固定的办公场所及相应基础设施，具备放射性检测设备及检测能力；  （三）熟悉并遵守中国出入境检验检疫、环境保护、固体废物管理的法律法规及相关标准；  （四）具有对废物原料进行环保质量控制及加工利用的措施和能力，并建立相应的管理制度，保证废物原料符合中国出入境检验检疫、环境保护、固体废物管理的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  第二十一条 申请人应当通过进境货物检验检疫监管系统提交注册登记申请，并在网络提交注册登记申请成功后的30天内向直属检验检疫局提交以下书面材料：  （一）注册登记申请书；  （二）营业执照及其复印件；  （三）进口经营资质证明文件及其复印件；  （四）管理制度文件；  （五）环保部门批准从事进口固体废物加工利用的书面证明文件。  第二十二条 直属检验检疫局对申请人提出的收货人注册登记申请，应当根据下列情况分别作出处理：  （一）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当场或者在5日内一次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为受理；  （二）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或者申请人按照检验检疫部门的要求提交全部补正申请材料且补正材料符合法定形式的，应当予以受理；  （三）未在规定期限内补正有关申请材料的，应当终止办理注册登记，并书面告知申请人；  （四）未按照要求全部补正申请材料或者补正后申请材料仍不符合法定形式的，不予受理该申请。  第二十三条 直属检验检疫局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0日内组成专家评审组，实施书面评审和现场核查。专家评审所需时间不计算在审查与决定期限内，但应当书面告知申请人。  评审组应当在评审工作结束后作出评审结论，向直属检验检疫局提交评审报告。  第二十四条 直属检验检疫局自收到评审报告之日起10日内作出是否准予注册登记的决定。  直属检验检疫局对审查合格的，准予注册登记并颁发注册登记证书；对审查不合格的，不予注册登记，并书面说明理由，告知申请人享有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第二十五条 收货人注册登记内容发生变化的，应当自变化之日起30天内向批准注册登记的直属检验检疫局提出变更申请，并按本办法第二十一条的规定办理。  涉及注册登记证书内容变更的，收货人申请变更时应当将原证书交回。直属检验检疫局批准的变更涉及原注册登记证书内容的，应当重新颁发证书。  收货人的名称、商业登记地址、法定代表人三项中累计两项及以上发生变化的，应当重新向直属检验检疫局提出注册登记申请。  第二十六条 收货人需要延续注册登记有效期的，应当在注册登记有效期届满90天前向批准注册登记的直属检验检疫局提出延续申请，并按本办法第二十一条的规定办理。  第二十七条 直属检验检疫局应当在注册登记有效期届满前，作出是否准予延续注册登记决定。  收货人未按时提交延续申请的，直属检验检疫局可以认定为不符合注册登记延续的法定条件，不予受理该申请。注册登记有效期届满后，注册登记自动失效。  第二十八条 直属检验检疫局作出不予受理注册登记、终止办理注册登记、不予注册登记决定的，申请人可以重新申请注册登记，并按本办法第二十一条的规定办理。  第四章 装运前检验  第二十九条 质检总局负责开发、维护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电子管理系统（以下简称装运前检验电子管理系统），实现装运前检验工作信息化管理。  第三十条 供货商应当在废物原料装运前，通过装运前检验电子管理系统申请检验检疫部门或者委托装运前检验机构实施装运前检验。  检验检疫部门、装运前检验机构应当通过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电子管理系统受理供货商的装运前检验申请、录入装运前检验结果、签发装运前检验证书。  第三十一条 装运前检验机构应当是在所在国家（地区）合法注册的检验机构。  装运前检验机构应当提前将下列信息向质检总局备案：  （一）经公证的所在国家（地区）合法注册的第三方检验机构资质证明；  （二）所在国家（地区）固定的办公和经营场所信息；  （三）通过ISO/IEC17020认可的证明材料；  （四）从事装运前检验的废物原料种类；  （五）装运前检验证书授权签字人信息及印签样式；  （六）公司章程。  提交的信息，应当使用中文或者中英文对照文本。  对提交材料完备的装运前检验机构，由质检总局对外公布。  第三十二条 检验检疫部门、装运前检验机构应当在境外装货地或者发货地，按照中国国家环境保护控制标准、相关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和装运前检验规程实施装运前检验。  第三十三条 检验检疫部门、装运前检验机构对经其检验合格的废物原料签发电子和纸质的装运前检验证书。  检验证书应当符合以下要求：  （一）检验依据准确、检验情况明晰、检验结果真实；  （二）有统一、可追溯的编号；  （三）检验证书应当为中文或者中英文，以中文为准；  （四）检验证书有效期不超过90天。  第三十四条 检验检疫部门在口岸到货检验检疫监管中发现货证不符或者环保项目不合格的，实施装运前检验的检验检疫部门或者装运前检验机构应当向质检总局报告装运前检验情况，并提供记录检验过程等情况的图像和书面资料。  第三十五条 装运前检验机构及其关联机构不能申请或者代理申请供货商注册登记，不能从事废物原料的生产和经营活动。  第三十六条 装运前检验机构备案信息发生变化的，应当自变化之日起30天内向质检总局提交变更材料，并按照本办法第三十一条的规定办理。  第三十七条 质检总局对已备案的装运前检验机构实施分类管理，按照诚信管理的原则将已备案的装运前检验机构分为A、B两类。  符合下列条件的装运前检验机构，按照自愿原则可以申请成为A类装运前检验机构：  （一）从事检验鉴定业务5年以上；  （二）具有与装运前检验业务相适应的检验人员及检测设备；  （三）具备按照中国环境保护、固体废物管理的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和质检总局关于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有关规定开展检验的能力。  （四）遵守法律法规，重视企业信用管理工作，严格履行承诺，具有较健全的质量管理体系，服务质量稳定。  不符合本条前款规定的装运前检验机构，列入B类装运前检验机构。  第五章 到货检验检疫  第三十八条 废物原料运抵口岸后，收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向入境口岸检验检疫部门报检，接受检验检疫监管。报检时应当提供以下纸质或者电子材料：  （一）供货商注册登记证书（复印件）；  （二）收货人注册登记证书（复印件）；  （三）装运前检验证书；  （四）限制类的废物原料，应当提供进口许可证明；  （五）合同、发票、装箱单、提/运单等必要的单证。  第三十九条 检验检疫部门应当依照检验检疫相关法律法规和规程、国家环境保护控制标准或者国家技术规范的其他强制性要求在入境口岸对进口废物原料实施检验检疫监管，根据污染程度实施消毒、熏蒸等卫生处理，未经检疫处理，不得放行。  质检总局可以依法指定在其他地点检验检疫。  第四十条 由B类装运前检验机构实施装运前检验的进口废物原料，检验检疫部门应当实施全数检验。  第四十一条 检验检疫部门实施进口废物原料检验检疫监管工作的场所应当符合进口废物原料检验检疫场所建设规范的要求。  第四十二条 从事进口废物原料检验检疫监管工作的人员应当经过质检总局的培训并考试合格。  第四十三条 检验检疫部门对经检验检疫未发现不符合国家环境保护控制标准、国家技术规范的其他强制性要求的进口废物原料，出具通关证明并放行；对不符合国家环境保护控制标准、国家技术规范的其他强制性要求的，出具退货处理通知单并书面告知海关；对发现动植物疫情的，要实施有效的检疫除害处理措施，如无有效处理措施则依法作退回或者销毁处理，并实施检疫监管。  第六章 监督管理  第四十四条 供货商和收货人应当依照注册登记的业务范围开展供货、进口等活动。  收货人所进口的废物原料，仅限用于自行加工利用，不得以任何方式交付其他单位、组织或者个人。  供货商、收货人及其关联机构不能从事废物原料装运前检验业务。  第四十五条 质检总局、检验检疫部门可以依照职责对供货商、收货人、装运前检验机构实施现场检查、验证、追踪货物环保质量状况等形式的监督管理。  第四十六条 装运前检验机构应当遵守中国相关法律法规和质检总局的有关规定，以第三方的身份独立、公正地开展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工作，并对其所出具的装运前检验证书的真实性、准确性负责。  第四十七条 质检总局或者检验检疫部门在进口废物原料检验监管工作中，发现装运前检验机构存在下列情形之一的，质检总局可以发布警示通报并决定在一定时期内不予认可其出具的装运前检验证书，但最长不超过3年：  （一）出具的装运前检验证书存在违反本办法第三十三条规定的；  （二）装运前检验机构存在违反本办法第三十五条、第四十六条、第五十九条规定情形的。  第四十八条 供货商、收货人有下列情形之一的，质检总局、直属检验检疫局依照职权撤销其注册登记：  （一）申请注册登记的地址不存在的；  （二）供货商商业登记文件无效、税务文件无效的；  （三）收货人营业执照无效的；  （四）法定代表人不存在的；  （五）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取得注册登记的；  （六）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注册登记的。  第四十九条 质检总局、检验检疫部门对供货商、收货人和装运前检验机构实施A、B、C三类风险预警及快速反应管理。  第五十条 对源自特定国家（地区）、特定类别的废物原料，检验检疫部门可以根据不同的风险预警类别采取加严检验、全数检验或者不予受理报检等措施。  第一节 供货商监督管理  第五十一条 供货商发生下列情形之一的，由质检总局实施A类风险预警措施，检验检疫部门1年内不受理其所供废物原料进口报检申请：  （一）废物原料存在严重疫情风险的；  （二）废物原料存在严重货证不符，经查确属供货商责任的；  （三）B类预警期间再次被检出环保项目不合格或者重大疫情的。  第五十二条 供货商发生下列情形之一的，由质检总局实施B类风险预警措施，检验检疫部门对其所供废物原料实施为期不少于180天且不少于100批的全数检验：  （一）1年内货证不符或者环保项目不合格累计3批及以上的；  （二）检疫不合格并具有较大疫情风险的；  （三）供货商注册登记内容发生变更，未在规定期限内向质检总局办理变更手续的；  （四）注册登记被撤销后重新获得注册登记的；  （五）按本办法第五十一条实施的A类风险预警措施解除后，恢复受理进口报检申请的；  （六）现场检查发现质量管理体系存在严重缺陷的。  第五十三条 供货商发生下列情形之一的，由质检总局实施C类风险预警措施，检验检疫部门对供货商所供的废物原料实施加严检验：  （一）废物原料环保项目不合格的；  （二）需采取风险管控措施的。  第五十四条 供货商发生下列情形之一的，质检总局撤销其注册登记：  （一）输出的废物原料环保项目严重不合格的；  （二）输出的废物原料应当退运，供货商不配合收货人退运的；  （三）输出的废物原料应当退运，自检验检疫部门出具环保项目不合格证明之日起6个月内，因供货商原因未将废物原料退运出境的；  （四）将已退运的不合格废物原料再次运抵中国大陆地区的；  （五）将注册登记证书或者注册登记编号转让其他企业使用的；  （六）提供虚假材料，包括提供虚假入境证明文件的；  （七）输出废物原料时存在弄虚作假等欺诈行为的；  （八）不接受检验检疫机构监督管理，情节严重的；  （九）违反本办法第四十四条第一款规定，超出业务范围供货的；  （十）违反本办法第四十四条第三款规定，供货商或者其关联机构从事装运前检验的；  （十一）不再具备本办法第十条规定的条件的。  第二节 收货人监督管理  第五十五条 收货人发生下列情形之一的，由质检总局实施A类风险预警措施，检验检疫部门1年内不受理其废物原料进口报检申请：  （一）废物原料存在严重货证不符，经查确属收货人责任的；  （二）B类预警期间再次被检出环保项目不合格或者重大疫情，经查确属收货人责任的。  第五十六条 收货人发生下列情形之一的，质检总局实施B类风险预警措施，检验检疫部门对其报检的废物原料实施为期不少于180天且不少于100批的全数检验：  （一）废物原料存在货证不符、申报不实，经查确属收货人责任的；  （二）收货人注册登记内容发生变更，未在规定期限内向直属检验检疫局办理变更手续的；  （三）1年内货证不符或者环保项目不合格累计3批及以上，经查确属收货人责任的；  （四）注册登记被撤销后重新获得注册登记的；  （五）按本办法第五十五条实施的A类风险预警措施解除后，恢复受理进口报检申请的；  （六）现场检查发现质量控制体系存在缺陷的。  第五十七条 收货人发生下列情形之一的，质检总局实施C类风险预警措施，检验检疫部门对其报检的废物原料实施加严检验：  （一）废物原料环保项目不合格的；  （二）需采取风险管控措施的。  第五十八条 收货人发生下列情形之一的，直属检验检疫局撤销其注册登记：  （一）伪造、变造、买卖或者使用伪造、变造的有关证件的；  （二）提供虚假材料，包括提供虚假入境证明文件的；  （三）将注册登记证书或者注册登记编号转让其他企业使用的；  （四）进口废物原料时存在弄虚作假等欺诈行为的；  （五）进口废物原料不合格拒不退运的；  （六）进口废物原料不合格，检验检疫部门出具环保项目不合格证明后6个月内因收货人原因未将不合格货物退运出境的；  （七）不接受检验检疫机构监督管理，情节严重的；  （八）违反本办法第四十四条规定的；  （九）不再具备本办法第二十条规定的条件的。  第三节 装运前检验机构监督管理  第五十九条 装运前检验机构发生下列情形之一的，质检总局实施A类风险预警措施，检验检疫部门不受理经其实施装运前检验的废物原料进口报检申请：  （一）经其实施装运前检验的废物原料，1个月内被检验检疫部门检出环保项目不合格累计5批及以上且环保项目不合格检出率达0.5%及以上的；  （二）经其实施装运前检验的废物原料，1年内被检验检疫部门检出环保项目严重不合格累计3批及以上的；  （三）给未实施装运前检验的废物原料出具装运前检验证书的；  （四）B类预警期间，经其实施装运前检验的废物原料再次被检验检疫部门检出环保项目不合格的；  （五）不接受监督管理，情节严重的。  第六十条 装运前检验机构发生下列情形之一的，质检总局实施B类风险预警措施，检验检疫部门对经其实施装运前检验的废物原料实施为期不少于180天且不少于1000批的全数检验：  （一）经其实施装运前检验的废物原料，1个月内被检验检疫部门检出环保项目不合格累计3批及以上且环保项目不合格检出率达0.5%以上的；  （二）经其实施装运前检验的废物原料，被检验检疫部门检出环保项目严重不合格的；  （三）经其实施装运前检验的废物原料，被检验检疫部门检出环保项目不合格，装运前检验机构未按照规定向质检总局报告有关情况的；  （四）未按照规定实施装运前检验出具装运前检验证书的；  （五）日常监管中发现质量管理体系存在缺陷的；  （六）按照本办法第五十九条实施的A类风险预警措施解除后，恢复受理进口报检申请的。  第六十一条 装运前检验机构发生下列情形之一的，质检总局实施C类风险预警措施，检验检疫部门对其实施装运前检验的废物原料实施加严检验：  （一）装运前检验机构备案信息发生变化，未按照规定要求提交变更材料的；  （二）经其实施装运前检验的废物原料，被检验检疫部门检出环保项目不合格情况未达到本办法第五十九条、第六十条规定的预警条件的；  （三）需要采取风险管控措施的。  第七章 法律责任  第六十二条 供货商、收货人因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被不予受理或者不予注册登记的，质检总局或者直属检验检疫局给予警告；供货商、收货人在1年内不得再次提起申请。  第六十三条 供货商、收货人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注册登记后被撤销注册登记的，在3年内不得再次提起申请；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四条 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供货商、收货人未取得注册登记，或者未进行装运前检验的，按照国家有关规定责令退货；情节严重的，由检验检疫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的规定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  第六十五条 进口废物原料的收货人不如实提供进口废物原料的真实情况，取得检验检疫部门有关证单的，由检验检疫部门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的规定没收违法所得，并处进口废物原料货值金额5%以上20%以下罚款。  第六十六条 收货人违反本办法第四十四条第一款规定超出业务范围开展进口活动的，由检验检疫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处3万元以下罚款。  第六十七条 进口废物原料检验检疫工作人员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滥用职权，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其刑事责任。  第八章 附 则  第六十八条 对从境外进入保税区、出口加工区、自贸区等特殊监管区域的废物原料的管理，依照本办法执行。  第六十九条 通过赠送、出口退运进境、提供样品等方式进境物品属于允许进口的废物原料的，除另有规定外，依照本办法执行。  海关特殊监管区和场所内单位在生产加工过程中产生的废品、残次品、边角料以及受灾货物属于废物原料需出区进入国内的，免于实施进口检验，依据有关规定签发通关证明。  第七十条 对进口废船舶，检验检疫部门依法实施检验检疫，免于提交供货商注册登记证书和装运前检验证书。  第七十一条 对外籍船舶、航空器及器材在境内维修产生的废物原料，检验检疫部门依法实施检验检疫，免于提交供货商注册登记证书、收货人注册登记证书、装运前检验证书和进口许可证明。  第七十二条 本办法中的“日”为工作日，不含法定节假日；“天”为自然日，含法定节假日。  第七十三条 来自中国香港、澳门和台湾地区的废物原料的检验检疫监督管理依照本办法执行。  第七十四条 进口废物原料的供货商、收货人向质检总局或者检验检疫部门提交的所有文件均以中文文本为准。  第七十五条 检验检疫部门根据业务需要，可以聘请相关专业人员辅助现场核查工作。  第七十六条 供货商、收货人注册登记和装运前检验机构管理实施细则，由质检总局另行制定。  第七十七条 本办法由质检总局负责解释。  第七十八条 本办法自2018年2月1日起施行。原国家检验检疫局1999年11月22日发布的《进口废物原料装运前检验机构认可管理办法（试行）》（原国家出入境检验检疫局令第2号）、国家质检总局2009年8月21日发布的《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国家质检总局令第119号）同时废止。 |